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26.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9년 3월 14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19년 3월 20일
- 라. 상정일자: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9. 3.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정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
-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선정 및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2조)
- 주민자치회의 회의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20조)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 수립·결

정·효력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제23조)

-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규정(안 제24조~제25조)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규정(안 부칙 제1조~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목)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차 시범구로 영등포구가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28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원칙 과 자치회장, 감사, 간사 선출, 분과위원회의 구성,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폭의 확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계획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과 지원조직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 으며,
 -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 독, 단체보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 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생활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새로이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와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지방자치법」 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2021년 5월까지 5개동이 시범 운영할 경우, 시행에 앞서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 재정과 인력부담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나,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 범위 등을 조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9조제1항 중 “2회까지”를 “1회만”으로 한다.
- 안 제17조제2항을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4조로 하고,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 규정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를 추가 신설한다.

5.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1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2019. 3. 22.

제안자: 허홍석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나,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 범위 등을 조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9조제1항 중 “2회까지”를 “1회만”으로 한다.
- 안 제17조제2항을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4조로 하고,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 규정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를 추가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2회까지”를 “1회만”으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을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4조로 하고,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 규정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를 추가 신설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2회까지</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7조(분과위원회)</p> <p>① (생략)</p> <p>② <u>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 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u></p> <p>③·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신설</u>〉</p> <p>제2조(적용례) (생략)</p> <p>제3조(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 지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p>	<p>제9조(위원의 임기) ① ----- -----, <u>1회만</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분과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 원으로 구성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 규정은 <u>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u> <u>효력이 있다.</u></p> <p>제3조(적용례) (원안 제2조와 같음)</p> <p>제4조(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 지에 관한 경과조치) (원안 제3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설치

제3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〇〇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5조(정원)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인구수 또는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동장은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방법 결정과 과정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2명 이내

③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능단체: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해당 자치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에서 해촉한 사람으로 해촉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원의 10분의 5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10분의 5를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6명 이하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위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위원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 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 순서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 후 위촉

⑥ 동장은 위촉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및 추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⑧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관련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기존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 위원 위촉 방법과 같다.

③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이를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두 개 동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자치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때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회계 감사와 사업 감사를 각 1명씩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한 분과위원 중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3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식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회계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보험)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동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 규정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

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91호
----------	------

제출연월일: 2019년 3월 14일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제5조)

- 1)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 처리,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기능
- 2) 회장 1명과 부회장 1~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정원

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12조)

- 1) 위원은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 공개 모집·추첨 및 위원선정관리 위원회에서 선정
- 2) 위원의 임기(2년) 및 연임에 대한 사항

라.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20조)

- 1) 주민자치회의 사무처리와 회계 및 사업 감사를 위해 1명의 간사와 2명의 감사 선임
- 2)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를 위해 동 특성에 맞는 분과위원회 구성
- 3)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사항

- 마.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 수립·결정·효력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 제23조)
- 바.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규정(안 제24조 ~ 제25조)
- 사.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감독 및 단체보험, 동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6조 ~ 제28조)
- 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규정(안 부칙 제1조 ~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 요구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
 - 2)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4)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라. 입법예고(2019. 2. 14. ~ 3. 6.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시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설치

제3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5조(정원)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인구수 또는 신청자수를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6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동장은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방법 결정과 과정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2명 이내

③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위원 위촉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직능단체: 각 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2.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해당 자치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에서 해촉한 사람으로 해촉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원의 10분의 5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10분의 5를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6명 이하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위원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

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 순서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 후 위촉

⑥ 동장은 위촉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및 추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⑧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관련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기존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 위원 위촉 방법과 같다.

③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이를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한 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두 개 동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자치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때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회계 감사와 사업 감사를 각 1명씩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4.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의사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치계획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3조(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식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회계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7조(보험)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동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3조(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